

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

제정 2024. 02. 28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내규는 상지대학교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.

제3조(과목개설 및 학점인정)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단에서 주관하고 FIND칼리지대학에서개설하여 운영한다.

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하고 “사회봉사”로 하며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.

제4조(이수구분)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.

제5조(이수대상) 학년 및 학과(전공)에 제한 없이 전체 재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.

제6조(이수기준) ① 봉사활동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내 안전교육을 포함한 이론 교육 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봉사기관은 다수의 기관에서 봉사한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.

③ 봉사활동은 최소 4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, 1일 최대 인정봉사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.

④ 봉사활동보고서 및 활동인증 서류 제출

제7조(담당교수) ①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·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는 봉사기관을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, 봉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대표와 협의한다.

제8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한 내에만 허용하고,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수강신청을 불허한다.

② 사회봉사 취득(신청)학점은 「학칙시행세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한도학점에 포함된다.

제9조(봉사기관 선정) 수강생은 대학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종합봉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봉사기관 중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(VMS)
2. 1365 자원봉사포털
3. 청소년 자원봉사 Dovol(두볼)

제10조(봉사활동 인정범위) ① 제10조에 따른 봉사기관에서의 활동을 인정한다.

- ② 헌혈 참여시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인정하며 학기 내 최대 1회만을 인정한다.
- ③ 기타 사회봉사단장 및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분야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‘P’ (Pass) 또는 ‘N’ (Non-pass)으로 표기한다.

- ② 봉사활동성적은 해당학기 및 전체평균평점 산출에서 제외한다.
- ③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‘N’ 으로 처리한다.

1. 교내 안전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2시간을 미이수한 경우
2. 봉사활동보고서 및 봉사활동인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3. 이 내규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2조(인증서 발급) ①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한다.

제13조(보칙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학칙」 및 「학칙시행세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